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24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 ...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5. 2. 25.
3. 회부연월일: 2025.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Ⅲ. 검토의견

□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

개정안은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가입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u>
<u><신 설></u>	<u>제27조(벌칙)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u>

	<u>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제26조(과태료)</u> (생략)	<u>제28조(과태료)</u> (현행 제26조와 같음)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현행법 제11조(사업)제1항제1호 및 정관 제26조(사업)제1항제1호 등에 따라 회원에 대한 급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¹⁾ 이 중,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²⁾는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임.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정관」

제26조(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제35조(급여의 종류) ① 일반회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저축급여
2. 삭제
3. 목돈급여
4. 종합복지급여
5. 지수연동급여

② 특별회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저축급여. 다만, 제32조 단서에 따른 퇴직급여금의 분할지급에 한함.
2. 퇴직생활급여
3. 종합복지급여
4. 지수연동급여

*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요 사업 목록은 【참고자료 1】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요 사업 참조

2) 종합복지급여 상세내용은 【참고자료 2】 종합복지급여 관련 현황 참조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3.10.24. 개정, 2024.10.25. 시행)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5.10.25.부터 시행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④ 보험회사(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송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요양기관 등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그러나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이므로,³⁾ 공제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회의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에도 「보험업법」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준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제26조에서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및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준용하여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과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27조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업법」과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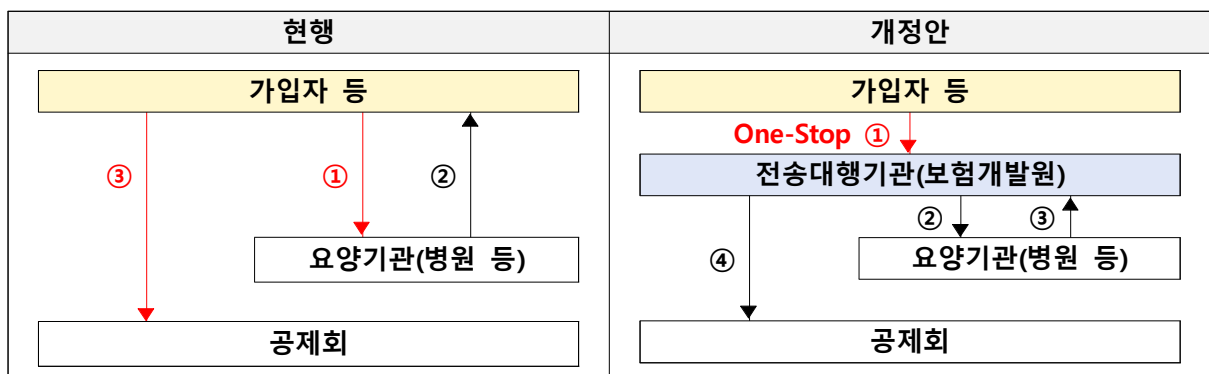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아래의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再保險),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현재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해 가입자 등은 청구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요양기관(병원 등)에서 발급받아 공제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 제26조에 따라 간소화 절차가 도입될 경우, 가입자 등은 전송대행기관에 급여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하면, 전송대행기관이 이를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발급받아 공제회에 전송하게 되므로, 급여금 청구의 편의성 및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표 1]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 비교



자료: 교육부,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과정에는 병원 진료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⁴⁾가 포함된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전송이 수반되므로, 개정안 제27조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업법」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보험업법」을 준용하면서, “보험계약자”는 “가입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각각 변경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한 내용은 유지하고 있는데,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는 가입자가 공제회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이 준용하는 현행 「보험업법」의 조항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보험업법」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⁵⁾

한편,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5년 10월 25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5)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금융위원회 및 보험개발원과 협의하여, 개정안에 대한 일부수정 의견을 제시함(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참고)

소화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시
점이므로, 다른 유사 제도와 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안 심사경과에 따라 시행일은 일부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보험업법」 개정('23.10.24.)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교직원공제회 회원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개정안 제26조는 「보험업법」의 개정사항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시 해당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통한 편의성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전송요청과 요양기관 의무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문구 수정 필요함(교직원공제회, 금융위원회 및 보험개발원의 의견 반영).

개정안	수정안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후단 생략)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른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후단 생략)

- 개정안 제27조는 의무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보험업법」의 벌칙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부수정**

- 개정안의 필요성 및 취지 등에 대하여 이견 없음.
- 다만, 개정안 제26조 「보험업법」의 준용으로도 요양기관의 의무가 인정되나,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함(교육부 수정안과 동일).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자료>

1.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요 사업

구 분			내 용
공 제 제 도	저 축	장기저축급여	재직 교직원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형 장기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부를 분할수령할 수 있는 연금형 제도
		목돈급여	재직 교직원의 여유자금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제도
		퇴직생활급여	퇴직 교직원을 위한 고수익 노후생활 저축제도
		법인에탁급여	학교법인 등이 보유한 적립금 등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예금형 제도
	보 험	종합복지급여	각종 불의의 사고·질병에 대비한 생명보험
		일반대여	회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여제도
	대 여	무이자대여	회원의 보건의료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대여제도
		복지누리대여	회원이 결혼·출산, 주택구입·임차 시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대여제도
		분할급여대여	퇴직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여제도
회원복지 서비스	각종 부조금		가입축하기념품, 퇴직기념품, 결혼축하금, 출산축하금 등
	회원복지시설		숙박시설, 레저·교통, The-K마음쉼, 무료 법률·세무·노무상담소 등
	The-K행복서비스		영화 티켓 증정, 도서 증정, 공연 관람 티켓 증정 등

주: 2025.5. 기준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2. 종합복지급여 관련 현황

○ 종합복지급여 상품 운영 현황

구 분	저연령층	중장년층	고령층 및 유병력자
개인보험(8)	자녀드림종합공제	THE종합공제	THE종합공제(간편)
		DA보장공제	DA보장공제(간편)
	자녀드림종합공제(엄마드림)	4대질병케어공제	4대질병케어공제(간편)
단체보험(1)	-	The-K 단체공제	

주: 2025.5. 기준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 회원별 종합복지급여 가입 현황

(단위: 명, %)

구 분	일반회원 ¹⁾	특별회원 ²⁾	보험회원 ³⁾	합 계
본회 회원수(A)	772,699	127,151	36,802	936,652
종합복지급여 가입자수(B)	77,183	27,827		141,812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비율(B/A)	(9.99)	(21.89)		(15.14)

주 1) 일반회원: 장기저축급여 가입자(교육공무직(무기 계약직) 포함)

2) 특별회원: 퇴직생활급여 및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중복가입자 제외) 가입자

3) 보험회원: 종합복지급여 단독 가입자(개인보험 가입자 기준)

1. 2025.5. 기준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 보유 건수

(단위: 건)

구 분	2022	2023	2024	2025.5.
보유건수	96,215	94,871	93,631	93,041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5.
지급건수	156,839	197,734	232,949	112,260
(전년 대비 증감)	-	(26.1)	(17.8)	-
지급액	340	380	437	201
(전년 대비 증감)	-	(11.8)	(15.0)	-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 운영 연혁

구분	시기	내용
판매 시작	2009.4.1.	· 「보험업법」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의 급여금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보험개발원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험업법」 제95조의5 등에 따른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
신규 판매 및 비례보상 지급 중단	2016.3.11.	· 2016.3.11.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고, 공제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를 등록·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중복가입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장급여 신규 판매 및 비례보상 지급 중단
비례보상 지급 재개	2021.6.	· 2020.8.5. 공제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를 등록·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신용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례보상 지급 재개

※ 운영 연혁 관련 법령 등

「보험업법」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법 제9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이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u>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u>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u>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3호, 2020.8.4. 개정, 2020.8.5. 시행)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는 <u>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 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35호, 2020.8.5. 개정, 2020.8.5. 시행)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4조의2 및 제26조의4제3항 관련)	
2. 거래정보 - (1) 개인 - 다. 보험계약 관련 거래정보	
[기존]	
· 등록기관: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체신관서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 이용기관: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체신관서 중 등록기관에 해당하는 자	
⇒ [개정]	
· 등록기관: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 이용기관: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등록기관에 해당하는 자	